

# 미국 의료보험 개혁법안의 주요 내용

노인철

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조정실장

미국 상·하원(이하 의회)에서 통과되어 1996년 8월 21일 클린턴 대통령이 최종 재가한 의료보험 개혁법안은 단체와 개인차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의 용이성과 구매가능성의 향상, 의료보험과 의료전달체계상의 낭비 및 부당행위와 오용의 시정, 의료예금계정의 사용 증가, 의료보험 행정의 단순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. 의료개혁법에 포함된 의료보험 적용의 용이성과 구매가능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## □ 새로운 법은 무엇을 하는가?

이 법은 새로운 의료보험 적용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가졌던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였던 사람들의 경우와 같이 보험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는 근로자들에게 정부가 보호를 제공할 수 있게 한다. 또한 직장 변경시 현존하는 조건 중의 하나인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적용이 상실된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.

## □ 새로운 법은 어떻게 보호를 제공하는가?

새로운 법은 최소한 18개월 동안 직장 근무로 보험적용을 받았던 사람에 한하여 고용주를 통하지 않고 자신의 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. 또한 연방법이 직장을 떠난 후의 단기간 동안 보험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COBRA 하에서 보험혜택이 종료되었다면 의료보험 개혁법안에서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.

의료보험 계약자의 부당행위가 없다면 보험업자는 보험료가 납부되는 한 보험조건들을 새롭게 갱신할 수 있다.

새 의료보험계획이 효력을 나타내기 6개월 전에 진단된 현존하는 건강상태를 가진 사람은 새 보험계획 첫 12개월 동안은 이전의 건강상태로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. 예를 들면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임신한 경우 임신 산전·후와 분만에 관련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. 그러나 그들이 보험에 가입한 동안은 물론 그 이후라도 보험을 유지하는 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□ 임신 근로자일 경우는 무엇을 하여야 하나?

임시 근로자가 현존하는 조건들을 가지고 직장을 바꾸거나 그만두어도 보험적용을 상실하지는 않는다. 임시 근로자는 12개월 미만의 직장 근무기간에 관하여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이 일단 12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면 보험회사는 이 기간 동안에 직장을 변경한 횟수와 상관없이 해당되는 임시 근로자에 대하여 보험적용을 하여야 한다.

□ 주정부는 규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?

주는 임시 근로자의 보험적용 자격요건으로서 12개월보다 적은 기간, 예를 들면 9개월 연속근무 기간을 요구하는 등 최소 근무기간 요건을 단축할 수 있으나, 12개월 이상의 근무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규정변경은 불가능하다.

□ 누가 혜택을 받게 되는가?

현존하는 조건때문에 보험적용을 거부당하고 있는 약 2천 1백만 사람들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. 또한 보험 유지를 위해서 원치 않는 직장에 머무르는 4백만 사람들도 직장을 변경하여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
□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가?

이 문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에 따라 다르다. 즉, 현존하는 조건때문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으나, 보험을 구입할 형편이 안되거나 고용주가 보험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라면 도움을 줄 수가 없다. 보험회사에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보험상품을 구입가능하게 개발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.

백악관의 대변인 Michael McCurry씨는 “이번 새 법에서는 보험 미가입자에 관한 문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일이 많다”고 표명하였다.

---

## □ 기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?

단체차원(직장단위)의 가입 보험적용에 해당된 경우 보험료는 변동이 없으나, 개인차원의 가입 보험적용자의 경우는 복잡한 양상으로의 변동이 예상된다. 즉,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보험료가 2%에서 30%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측한 연구보고가 있다. 개인차원의 보험가입 보험료는 이미 일년 안에 8%에서 15%까지 인상된 것이다.

## □ 직장을 그만두거나 상실한다면 보험적용은 어떻게 되는가?

당사자가 의료보험을 구입할 수 있다면 보험적용에는 변동이 없다. 보험회사는 COBRA에 의한 보험적용이 종료되고, 18개월 동안 고용주 기준의 보험적용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보험계약을 판매하도록 요청받는다.

## □ 새 직장으로 이동할 때 동일한 보험적용을 유지할 수 있는가?

그렇지 않다. 보험전문가들은 이동(portability)이란 단어는 이 단어가 의미하지 않는 어떤 것을 암시함을 인정한다. 보험급여 조건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므로, 전 직장의 보험급여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이동할 수 없고, 새로운 고용주가 제공하는 새로운 의료보험계획을 적용받게 된다.

## □ 새로운 법은 소규모 사업체나 자영업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가?

그렇다. 자가고용된 근로자는 소득세의 많은 부분을 의료보험 비용으로써 공제받을 수 있다. 현재는 30%까지 공제받고 있으나, 2006년에는 80%까지의 공제를 받을 것이다. 연차적으로는 1997년 40%, 1998년 45%, 2003년 50%, 2004년 60%, 2005년에는 70%정도의 공제를 받게 될 것이다.

종업원규모로 인하여 보험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사업체는 더 이상 보험회사로부터 그들의 보험구입을 거절당하지 않을 것이다. 즉, 이번 새 법은 보험회사가 2명에서 50명사이의 종업원을 가진 소규모 회사에게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.

## □ 새로운 법은 기존의 의료보험계획 또는 HMO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선택을 제공하는가?

공화당은 입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료예금계정이 실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. 50명 또는

이 보다 적은 근로자를 가진 사업장 및 자가고용자는 1997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의료예금계정(MSA)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다.

개인퇴직계정(IRA)과 유사한 의료예금계정은 개인 또는 가정의 일상적인 의료비뿐만 아니라 심각하며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. 이를 위해 높은 공제제도(high-deductible policies)가 마련되어 있다. 또한 의료예금계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매년 그들 공제금액의 65~75%를 기여하게 될 것이다. 만약 그들이 의료예금계정의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금계정금액은 매년 적립금액 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다.

미 의회가 시범프로그램의 연장을 승인하지 않는 한 시범프로그램은 2000년에 종결된다. 그러나 의료예금계정을 선택한 사람은 2000년 후에도 계속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.

#### □ 새로운 법은 만성적이거나 말기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?

이 법은 장기 치료비용을 직접 지불한 사람들이 다음해 초 소득세에 대한 상환을 받을 때 치료 비용이 조정된 총소득의 7.5% 이상이 되면 표준화된 항목의 의료비공제로써 상환금액에 포함되는 것을 가능케 할 것이다. 말기질병의 보편화 및 대중화에 따라 임종하기 전 보험회사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현금을 지불한 경우 보험급여는 비과세 처리될 것이다.

#### □ 누가 새로운 세금 규정에 따라 지불하는가?

법인소유의 생명보험계약과 관련된 대부금에 대한 세금공제 부여를 포함하는 동시에 세금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세금규정이 마련되어 있다.

#### □ 언제 새로운 법률은 효력을 나타내는가?

사람들이 현재 조건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인정을 받는다 하여도 새로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효력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. 몇몇 주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의료보험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보험적용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개발에 더욱 많은 시일을 소요할 수도 있다. 반면 의료예금계정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.